

의안번호	2203379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 계 번호	24F3303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의 탄력세율 적용 －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별로 추계됨

- (시나리오1) 탄력세율을 $\pm 10\%$ 적용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± 122 억원, 2029년 ± 152 억원 등 5년간 계속 적용 시 총 ± 684 억원(연평균 137억원)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(시나리오2) 탄력세율을 $\pm 30\%$ 적용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± 367 억원, 2029년 ± 455 억원 등 5년간 계속 적용 시 총 $\pm 2,053$ 억원(연평균 411억원)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(시나리오3) 탄력세율을 $\pm 50\%$ 적용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± 611 억원, 2029년 ± 758 억원 등 5년간 계속 적용 시 총 $\pm 3,422$ 억원(연평균 684억원)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역자원시설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화력발전 탄 력세율 적용 (안 제146조 제5항 단서)	시나리오1 (탄력세율 $\pm 10\%$)	± 122	± 130	± 137	± 144	± 152	± 684	± 137
	시나리오2 (탄력세율 $\pm 30\%$)	± 367	± 389	± 411	± 433	± 455	$\pm 2,053$	± 411
	시나리오3 (탄력세율 $\pm 50\%$)	± 611	± 648	± 685	± 721	± 758	$\pm 3,422$	± 68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6조제5항 단서(과세표준과세율)	○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대상 추가 -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% 범위에서 가감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6조제5항 단서(과세표준과 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·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화력발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여부 및 적용세율에 대해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가정
 - 현재 화력발전이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
 - 탄력세율은 $\pm 10\%$, $\pm 30\%$, $\pm 50\%$ 시나리오별로 적용한다고 가정
 - 탄력세율 계속 적용은 5년간으로 가정
- 시나리오별 탄력세율에 적용되는 과세기준가액은 화력발전의 발전량 전망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액으로 가정
 - 발전량 전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2~2036년)에서 전망하고 있는 화력 발전량만큼 발전한다고 가정
 - － 발전량 전망은 5년 단위로 전망되어 2030년과 2036년 전망값만 존재하므로 2023년 실적치에서 2030년 전망액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- 향후 5년간 표준세율 등 추가적인 제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개요 및 과세실적

- (제도개요)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되며, 화력발전은 탄력세율 적용에서 제외
 -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6원
- (과세실적) 최근 5년간 화력발전의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 - 화력발전은 2018년 1,255억원, 2022년 1,063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,550억원으로 나타남

[표 3] 최근 5년간 화력발전 과세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	누적
화력발전 과세	1,255	1,152	1,057	1,023	1,063	5,550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방법 및 결과

- 향후 전망된 화력 발전량에 표준세율을 반영하여 5년간 과세기준액 산정
 - 전망된 향후 5년간의 화력발전량에 표준세율(0.6/kWh)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기준액은 2025년 1,222억원, 2029년 1,515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,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
 - 화력발전량(석탄+LNG) 전망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2030년 전망액 264.9테라와트시(TWh)을 기준으로 2023년 실적치(179.3TWh)가 매년 12.2TWh 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전망

[표 5] 향후 화력 발전량 전망: 2024~2030년

(단위: TWh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발전량	179.3	191.5	203.7	215.9	228.1	240.3	252.5	264.9

주: 2023년 발전량(석탄+LNG)은 실적이며, 2030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임

자료 : 한국전력공사, 「2023년 한국전력통계」, 2024.5 및 산업통상자원부 ‘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’(2023.1.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6] 향후 5년간 화력발전 과세기준액 추정

(단위: TWh,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발전량 (A)	203.7	215.9	228.1	240.3	252.5	1,140.5
세수 증가분 (B=A×0.6원/kWh)	1,222	1,296	1,369	1,442	1,515	6,844

주: 발전량 테라와트시(TWH)는 와트시(WH)의 10^{12} 배수, 키로와트시(kWh)는 와트시(WH)의 10^3 배수

□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감액은 과세기준액에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별로 산정

- (시나리오1) 화력발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모두 $\pm 10\%$ 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± 122 억원, 2029년 ± 152 억원 등 5년간 계속 적용 시 총 ± 684 억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(시나리오2) 화력발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모두 $\pm 30\%$ 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± 367 억원, 2029년 ± 455 억원 등 5년간 계속 적용 시 총 2,053억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(시나리오3) 화력발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모두 $\pm 50\%$ 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5년 ± 611 억원, 2029년 ± 758 억원 등 5년간 계속 적용 시 총 3,422억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화력발전 시나리오별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과세기준액(A)	1,222	1,296	1,369	1,442	1,515	6,844
A× $\pm 10\%$ 증감액	± 122	± 130	± 137	± 144	± 152	± 684
A× $\pm 30\%$ 증감액	± 367	± 389	± 411	± 433	± 455	$\pm 2,053$
A× $\pm 50\%$ 증감액	± 611	± 648	± 685	± 721	± 758	$\pm 3,422$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